



|   |  |  |
|---|--|--|
| <p>구매기업은 본인과의 납품계약의 하자, 전산조작오류, 기타 사유를 이유로 은행에게 발주서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p> <p>②~⑤ (기재생략)</p> <p><b>제 4조 (개별대출의 실행)</b></p> <p>① (기재생략)</p> <p>② 개별대출의 실행은 발주서 상 납품기한 <b>전</b> 은행영업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p> <p>③~④ (기재생략)</p> <p><b>제5조 (개별대출금의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 ~ 제6조 (대출의 제한)</b><br/>(기재생략)</p> <p><b>제7조 (면책)</b></p> <p>① 본인의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의 또는 전산조작오류 등 과실로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를 은행에 전송한 경우, 은행이 이를 본인에 의한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로 믿고 이에 따라 본인에 대한 대출을 취급한 이상, 은행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니다. 단,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p> <p>② 은행은 본인으로부터 접수한 전자적 방식에 의한 거래가 천재지변,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 본인에 대해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사유를 통지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p> <p><b>제 8 조 (대출약정의 종료) ~ 제 9 조 (추가약정의 효력)</b><br/>(기재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추 가 약 정 서</b></p> <p style="text-align: center;">(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p> <p><b>제1조 (서류의 제출) ~ 제2조 (입금계좌)</b><br/>(기재생략)</p> | <p>구매기업은 본인과의 납품계약의 하자, 전산조작오류, 기타 사유를 이유로 은행에게 발주서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p> <p>②~⑤ (현행과 같음)</p> <p><b>제 4조 (개별대출의 실행)</b></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개별대출의 실행은 발주서 상 납품기한 <b>직전</b> 은행영업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p> <p>③~④ (현행과 같음)</p> <p><b>제5조 (개별대출금의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 ~ 제6조 (대출의 제한)</b><br/>(현행과 같음)</p> <p><b>제7조 (면책)</b></p> <p>본인의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의 또는 전산조작오류 등 과실로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를 은행에 전송한 경우, 은행이 이를 본인에 의한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로 믿고 이에 따라 본인에 대한 대출을 취급한 이상, 은행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니다. 단,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p> <p><b>&lt;삭제&gt;</b></p> <p><b>제 8 조 (대출약정의 종료) ~ 제 9 조 (추가약정의 효력)</b><br/>(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b>추 가 약 정 서</b></p> <p style="text-align: center;">(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p> <p><b>제1조 (서류의 제출) ~ 제2조 (입금계좌)</b><br/>(현행과 같음)</p> | <p>용어 수정</p> <p>항 번호 삭제 및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문구 삭제 (금감원 권유)</p> |
|---|--|--|

|   |   |   |
|---|---|---|
| <p><b>제3조 (개별대출의 실행)</b><br/> ①~③ (기재생략)<br/> ④ 본인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담보대출채권은 그 만기일이 발행일(통보일)로부터 180일 이내인 채권에 대하여만 대출을 신청하기로 합니다.<br/> ⑤ 대출가능기간은 외상매출채권별로 은행과 구매기업이 약정한 협력기업의 대출취급가능일부터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전 은행영업일까지로 합니다.<br/> ⑥ (기재생략)</p> <p><b>제4조 (개별대출의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 ~ 제11조 (본 추가약정의 효력)</b><br/> (기재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기업용)</b><br/> (포괄계약)</p> <p>(기재생략)</p> | <p><b>제3조 (개별대출의 실행)</b><br/> ①~③ (현행과 같음)<br/> &lt;삭제&gt;<br/> ④ 대출가능기간은 외상매출채권별로 은행과 구매기업이 약정한 협력기업의 대출취급가능일부터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직전 은행영업일까지로 합니다.<br/> ⑤ (현행과 같음)</p> <p><b>제4조 (개별대출의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 ~ 제11조 (본 추가약정의 효력)</b><br/>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b>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기업용)</b><br/> (포괄계약)</p> <p>(현행과 같음)</p> | <p>외상매출채권 만기일 단축에 따른 삭제 체상 및 용어 수정 체상</p> |
|---|---|---|

2. 개정 시행일: 2019년 7월 4일

3. 기 거래 고객에 대한 적용: 적용